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-171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11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장학금 지급대상 학교의 범위를 초·중·고등학교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연령 및 계층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장학금 지급대상 학교 범위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추가

나. 장학금 지급대상 학생 범위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추가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3. 10. 5. ~ 10. 25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3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해당없음
- 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를”을 “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2호 중 “우수한”을 “우수하고 선행(善行)으로 타의모범이 되는”으로, “및 대학교”를 “·대학교 및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학교”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<u>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</u>를 말한다.</p> <p>3. (생 략)</p> <p>제6조(장학금 지급대상) ①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구에 주소를 두고, 장학금 신청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 다만, 다른 장학금 수혜사실이 없는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성적이 <u>우수한</u> 학생으로서 선발기준에 적합한 <u>고등학교 및 대학교</u>에 재학 중인 학생</p> <p>3.·4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 <u>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「평생교육법」제31조제2항에 따른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</u> ----.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장학금 지급대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우수하고 선행(善行)으로 타의모범이 되는</u> ---- ·<u>대학교 및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</u>-----</p> <p>3.·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1항에
해당하지 않음.

3. 미첨부 사유

비용추계 대상 아님

4. 작성자 : 복지동행국 교육정책과 신희영 (☎ 3153-8952)